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서

※ 뒤쪽의 유의사항과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일
------	-----	---------

자영업자관리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
----------	--------------------------------------

신청인	상호(법인명)		
	소재지	전화번호	
	근로자 수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현행		변경	
기준보수 신고 등급 및 보수액		()년도 기준보수액	
등급	(원)	등급	(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지사)장 귀하

※ 처리 사항(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수			
등급		기준보수액	

유의사항

1. 신고한 기준보수액은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실업급여 지급액의 기초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 제69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5조의4에 따라 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3.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됩니다.

작성방법

1. “자영업자관리번호” 란에는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된 자영업자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 란에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상의 등록번호, 고유번호 또는 농·어업경영체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농·어업경영정보” 로 가입한 자영업자는 상호에 경영주명을 적습니다.
4. “근로자 수” 란에는 신청서 제출일 당시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5. “보험료산정 기준보수액” 란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적습니다.